연구실 안전관리 규정

2006. 4. 1 제정 2008. 4. 1 개정 2009. 4. 1 개정 2010. 4. 1 개정 2014. 11. 24 개정 2015. 7. 1 개정 2017. 4. 1 일부개정 2019. 9. 1 개정 2020. 1. 1 개정 2021. 4. 1. 일부개정 2023. 12. 1. 일부개정 <만전관리팀>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연구실안전법"이라 한다.)에 의거하여 고려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·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개정 2019. 9. 1.>

제2조 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교의 과학기술분야 연구 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적용한다.

<개정 2019. 9. 1.>

- 제3조 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1. "연구실"이라 함은 본교의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·장비·연구 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·실습실·실험준비실을 말한다.
 - 2. "연구주체의 장"이라 함은 본교의 대표자를 말한다.
 - 2의2. "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"라 함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.
 - 3. "연구실책임자"라 함은 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 자를 직접 지도 · 관리 ·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.
 - 3의2. "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"라 함은 각 연구실에서 연구실책임자의 지도하에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 - 4. <삭제 2017. 4. 1.>
 - 5. "연구활동종사자"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교원·교직원·연구원·대학생·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.
 - 6. "위험물안전관리자"란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하며 "위험물 안전관리보조자(정.부)"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중복 선임 시 그 직무의 대리자를 말하고, "구역관리책임자"란 보안업무규정 제26조에 지정된 자를 말한다.
 - 7. "안전관리"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·가스폭발·화학물질·실 험폐기물·방사능·미생물 누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으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.
 - 8. "안전점검"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

- 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. 9. "정밀안전진단"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.
- 10. "보호구"라 함은 사고방지 및 외부의 유해한 자극물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 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,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2차적인 안전장비를 말한다.
- 11. "안전표식"이라 함은 연구실내 위험시설·기구·장비·위험장소·위험 물질에 대한 경고나 안내사항 또는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표시된 그림·기호·문자를 포함한 형체를 말한다.
- 12. "연구실사고"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·질병·신체 장해·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·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 을 말한다.
- 13. "유해인자"라 함은 화학적·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.
- 14. "중대 연구실 사고"라 함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 서 관련 정부부서 장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.
- 15. "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'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.

<개정 2014. 11. 24., 2017. 4. 1., 2019. 9. 1.>

제 2 장 조직과 직무

- 제4조 (조직) ① 본교 내 연구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팀을 주관부서로 하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두며, 위험물안전관리법 또는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.
 - ②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.

<개정 2016. 11. 1., 2017. 4. 1., 2019. 9. 1.>

- 제4조의2 (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) ① 연구실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의결사항은 본교 「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규정」 에 따른다.

<신설 2017. 4. 1., 개정 2019. 9. 1., 개정 2022. 4. 1>

- 제5조 (연구주체의 장 직무)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 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.
 - 1.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,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.
 - 2.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 - 3. 연구실 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.
 - 4.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·훈련을 실시한다.
 - 5.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,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

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6.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실로서 유해·위험물질 및 시설·장비 취급과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.
- 7.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주체의 장은 그 결과를 관련 정부부서 장관에게 보고하고,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
- 8.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또는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및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실의 사용제한·금지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한다.
- 9. 연구실 사용제한 조치가 있는 경우에 연구주체의 장은 그 사실을 관련 정부부서 장관에게 즉시 보고한다.
- 10.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매년 건강검진 실시, 사망 상해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 계상 결과를 관련 정부부서 장관에게 보고한다.
- 11.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하는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.0 이상 안전관련 예산을 반영하여야 야 한다.

<개정 2023. 12. 1.>

- 12.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은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하며 사용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가. 보험료
- 나.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 · 훈련
- 다.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
- 라. 건강검진
- 마.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· 유지 및 보수
- 바.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
- 사.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
- 아.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13. 삭제

<개정 2017. 4. 1., 2019. 9. 1.>

- 제6조 (연구실책임자의 직무) ① 연구실책임자는 본교 연구실 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.
 - 1.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
 - 2.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
 - 3.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실시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
 - 가.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
 - 나.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
 - 다. 연구실 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
 - 4.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사고경위서[별표3]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보고하고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 - 5.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
 - 6. 연구실 일상점검 확인 및 점검일지관리에 관한 사항
 - 7.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의 연구실 내 비치 및 착용에 관한 사항
 - 8. 기타 연구실 안전에 관한 사항
 - ② 연구실책임자는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지도·관리·감독하며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연구실

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한다.

<개정 2017. 4. 1., 2019. 9. 1., 2020. 1. 1, 2022.04.01.>

- 제7조 (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)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본교 연구실 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.
 - 1.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
 - 2.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 사항
 - 3. 연구실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
 - 4.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
 - 5.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·조언
 - 6.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의 유지·관리
 - 7. 안전장치 ·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항
 - 8.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및 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
 - 9.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비치에 관한 지도 조언 사항
 - 10. 안전한 연구환경조성을 위한 연구활동종사자(연구책임자 포함)에 대한 기술적 지도·조언에 관한 사항
 - 11.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
 - 12. 그 밖에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
 - <개정 2014. 11. 24., 2017. 4. 1., 2019. 9. 1., 2022.04.01.>
- 제7조의2 (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)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본교 연구실 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.
 - 1.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보관에 관한 사항
 - 2. 연구실 사고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 - 3.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
 - 4.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 · 훈련에 관한 기록 유지
 - 5. 매일 1회 연구활동 시작 전 일상점검 실시 및 보고
 - 6. 연구실 안전표식의 유지관리
 - 7.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및 보고
 - 8. 연구실 비상연락망 및 배치도 관리에 관한 사항
 - 9.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
 - <신설 2017. 4. 1., 2019. 9. 1.>

제8조 삭제 <2017. 4. 1.>

- 제9조 (연구활동종사자의 직무) 연구활동종사자는 본교 연구실 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.
 - 1.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
 - 2. 연구실 안전교육·훈련 이수에 관한 사항
 - 3. 안전한 연구실 환경조성 및 시설·장비의 사전확인·점검에 관한 사항
 - 4. 연구실에 사고가 발생하거나, 연구시설의 안전에 관련된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연구실의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
 - 5. 연구활동종사자는 법에서 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·규범 등을 준수하고 연구실안전환경 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한다.
 - 6. 삭제 <2019. 9. 1.>
 - 7. 삭제 <2017. 4. 1.>

- 8. 연구실 안전을 위한 긴급비상연락 및 연구실 환경 개선에 관한 의견 상신
- 9. 기타 연구활동종사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를 위해 관련 정부부서 장관이 정하는 사항

<개정 2017. 4. 1., 2019. 9. 1.>

- 제10조 (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과 직무) ① 본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 또는 시행령 제12조,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에 의거 "위험물안전관리자"를 선임한다.
 - ②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.
 - 1. 위험물 저장, 취급에 관한 지시 및 관리 감독
 - 2. 위험물 취급 작업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의 수행
 - 3. 화재 및 재난발생시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연락업무
 - 4.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보조자를 두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지시
 - 1) 저장소의 위치, 구조, 설비가 법 제5조 제4항에 적합여부의 점검과 점검사항의 기록, 보존
 - 2) 저장소의 구조 또는 설비의 이상 발견 시 관계자에게 연락 및 응급처치
 - 3) 화재발생시 소방관서 등에 연락 및 응급처치
 - 4) 저장소의 계측, 제어, 안전장치 등의 적정한 유지관리

제 3 장 연구실 안전교육 및 훈련·안전점검·안전진단

- 제11조 (안전교육 및 훈련)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·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1.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.
 - 2.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·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[별표4]와 같다.
 -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자에 대하여 연구실 출입을 제한한다.
 - ③ 연구실책임자는 실험·실습 전 [별표1]의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, 연구실 내 게 시 및 주관부서에 교육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④ 연구실책임자는 안전교육 이수 및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
 - ⑤ 삭제

<개정 2014. 11. 24., 2017. 4. 1., 2019. 9. 1.>

- 제12조 (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)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실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일상점검 :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·기구·전기·약품·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 기 전에 일상점검을 매일 1회 실시
 - 2. 정기점검 :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·기구·전기·약품·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 년 1회 이상 실시
 - 3. 특별안전점검 : 폭발사고·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
 - 1. 삭제

- 2. 삭제
- 3. 삭제
- 4. 삭제
- 5. 삭제
- 6. 삭제
- 7. 삭제
- ③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유해화학물질, 독성가스,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2년에 1회
-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1. 24., 2017. 4. 1., 2019. 9. 1.>

제 4 장 건강검진 및 보험가입

제13조 (건강검진) 연구주체의 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4. 11. 24., 2019. 9. 1.>

제14조 (보험가입)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상해·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7. 4. 1., 2019. 9. 1.>

제 5 장 위험물 취급 및 보호구 착용

- 제15조 (위험물저장소 설치) 본교에 설치된 위험물저장소는 각 대학에서 관리한다.
- 제16조 (유해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) ① 유해위험물의 저장·조작·처리를 하는 구역안에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두어서는 안 된다.
 - ② 연구실에는 최소의 수량만 비치하여 사용하고, 위험물저장소 내에도 위험물안전관 리법 규정에서 정하는 지정수량 이내로 보유· 비치· 저장하여야 한다.
 - ③ 유해위험물 특히 극약물 등은 지도교수의 허가 없이 임의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되다.
- 제17조 (위험물저장소 출입자의 준수사항) ① 위험물저장소 출입자는 위험물안전관리자(정. 부)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.
 - ② 출입은 시약의 입출고에만 한하고, 점화원이 될 수 있는 금속, 정전기 옷, 라이터 등의 소지는 일체 금지한다.
 - ③ 저장소의 구조, 설비 등의 이상 발견 시 즉시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8조 (관리 및 책임) ① 위험물안전관리자(정)의 부재 시에는, 대학에서 지정한 위험물안 전관리자(부)로 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.
 - ②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취급 작업 시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시 및 감독을 하고, 저장소의 관계인과 종사자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.
 - ③ 연구실내에서는 시약 (18ℓ) 용기 통을 비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위험물 저장소에는 지정된 비치수량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.
 - ④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피의자로 하여금 책임을 묻고, 연구실책임자(지도교수)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(정.부)도 위험물안전관리법,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및 관련법 준수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진다.

<개정 2017. 4. 1.>

제19조 (소화설비 및 소화기의 비치) 소화설비 및 소화기는 각 연구실 또는 지정한 장소에 적절하게 비치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9. 9. 1.>

- 제20조 (실험 폐액처리) 삭제 <2023. 12. 1>
- 제20조의2 (실험폐액 등의 수집 및 처리) ① 연구실책임자(또는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)는 실험폐액 등의 처리에 있어 별표 5의 수집 처리방법에 따라 담당 연구실에서 배출된 실험 폐액 등을 성실하게 분리 수집하여야 하며, 수집된 실험폐액 등은 관리처 안전 관리팀장에게 그 처리를 의뢰하여야 한다
 - ② 연구실책임자(또는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)는 실험폐액 등 연구실에서 발생되는 물질에 대하여 그 위험성 및 관리방안에 관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지도·관리·교육·감 독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을 진다.

<본조 신설 2023. 12. 1.>

- 제21조 (안전표식 설치 및 부착) ① 유해위험성이 있는 기술장비·공구·기구·비품 또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에는 반드시 적절한 안전보건표지[별표2]를 설치하거나 부착하고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 - ② 각 연구실 출입구등 보기 쉬운 곳에 '비상연락망', '위험물 배치도' 등을 부착하여 야 한다.

<개정 2014. 11. 24., 2019. 9. 1.>

- 제22조 (연구활동 금지자) 법적 전염병 또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나 의심이되는자, 정신분열증·마비성치매·기타 정신질환에 걸린 자는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없다.
- 제23조 (보호구 착용) 연구활동사자는 연구활동업무 수행 시 실험복·보안경·안전장갑· 발을 감싼 신발 등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1. 24.>
- 제24조 (안전장치 제거 시 통보) ① 필요에 따라 일시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그 기능을 상실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도교수 또는 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아야한다.
 - ② 허가를 받아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그 기능을 상실하게 한 경우에 그 필요성 이 없어진 때에는 곧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안전장치에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구실책임자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4. 11. 24., 2017. 4. 1., 2019. 9. 1.>

- 제25조 (구급용품의 비치) ① 유해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각 연구실은 응급치료를 위하여 구급용품·기구·재료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.
 - ② 연구실에서는 당해 연구개발활동에 맞는 안전보호구를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수 이상으로 구비해야 하고, 사용 후에는 보호구함에 넣어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4. 1.>

제 6 장 연구실 사고 예방과 대책

- 제26조 (사고조사의 목적) 주관부서는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사고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, 적절한 방지대책을 적용시킴으로써 동종 또는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있다.
- 제27조 (사고조사의 보고) ① 사고발생 시 최초 발견자는 연구실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야 하며 연구실책임자는 사고보고체계[별표3의2]에 의해 주관부서에 사고 발생 상황을 통보하고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변경 및 훼손없이 원상태로 보존하여야한다.
 - ② 연구실책임자는 사고경위서[별표3]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, 주관 부서는 사고조사표[별표3의1]를 작성하여 연구주체의 장 및 유관기관에 보고하여야

하다.

- 1.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관기관에 전화, 팩스, 전자우편이나 그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- 2. 일반연구실 사고(중대사고 제외) 발생 시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유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- ④ 주관부서는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공중의 안전을 위해 연구실의 사용제한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⑤ 주관부서 및 관계부서에서는 동종·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4. 11. 24., 2017. 4. 1., 2019. 9. 1., 2020. 1. 1.>

- 제27조의2 (연구실 유형별 안전수칙)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유형별 안전수칙을 실험실 에 비치하여야 하며, 필요할 경우 각 연구실의 유형 및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의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.
 - ② 연구실 유형별 안전수칙은 본교 대응매뉴얼에 따른다.

<신설 2019. 9. 1., 개정 2020. 1. 1.>

- 제27조의3 (연구실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방안) ① 사고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실 사고보고 체계[별표3의2]를 연구실에 비치하여야 한다.
 -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내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평상시 물적·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실 사고발생시 대처요령을 숙지하고, 사고발생 시 요령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하여야 한다.
 - ③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은 본교 대응매뉴얼에 따른다.

<신설 2020. 1. 1.>

제28조 삭제<2020. 1. 1.>

- 제29조 (안전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준수사항)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활동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1.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및 안전수칙을 준수한다.
 - 2. 안전지침서를 숙지하고 그 지침에 따라 주의해서 연구에 임한다.
 - 3. 당해 직무에 맞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연구실험에 임한다.
 - 4. 해당 연구의 전반을 숙지하고, 가상의 연구실험을 충분히 반복한다.
 - 5. 유해 위험물질 취급 시 반드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입회하에 실시를 한다.
 - 6. 실험복, 보안경, 안전장갑, 발을 감싼 신발 등 보호구를 착용한다.
 - 7. 유해 위험 장소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허가 없이 출입을 금지한다.
 - 8. 화재 등 비상시에는 즉시 실험을 중지하고 전열기 및 전등을 소등한 후 비상구로 신속하게 대피한다.
 - 9. 유해위험성이 있는 업무를 일과 시간 후에 계속하여야 할 때에는 반드시 지도교수와 당직자에게 알리고 1인 이상이 상주한 상태에서 수행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4. 11. 24., 2017. 4. 1., 2019. 9. 1.>

제30조 (준용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에 따른다.

<개정 2017. 4. 1., 2019. 9. 1.>

부 칙

이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1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 (제1조, 제3조, 제4조, 제6조, 제8조, 제9조, 제11조, 제28조 개정)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 (제1조, 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1조, 제12조, 제14조, 제18조, 제24조, 제25조, 제27조, 제28조, 제29조, 제30조 개정)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제4조의2, 제5조 내지 제7조 개정)

부 최

이 규정은 2023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 (제5조, 별표3 개정, 제20조 삭제, 제20조의2, 별표 5 신설) [별표1] 안전교육일지

안전교육일지

작성일자: 년 월 일

건물명		학과(부)명	
연구실명		실번호	
연구실 인원		연락처	
연구실책임자	(서명)	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	(서명)

1 2 3 4 4 5 6 6 7 8 9 10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5 16 17 18 19 10	교육일자	교육시간	교육내용	교육인원	비고
3 4 4 6 6 6 6 7 7 8 9	1				
4 6 6 7 7 8 9 9 9 10 10 10 11 12 10 13 14 15 16 17 18 19 20 10 21 22 10 23 24 10 25 26 10 27 28 10 30 10 10 10 10 10 10 11 12 10 10 12 13 10 10 15 16 10 10 17 18 10 10 19 10 10 10 20 10 10 10 21 10 10 10 22 10 10 10 23 10 10 10 24 10 10 10 25 10 10 10	2				
5 6 1	3				
6 7 8 9	4				
7 8 9	5				
8 9 10 0 11 11 12 0 13 0 14 0 15 0 16 0 17 0 18 0 19 0 20 0 21 0 22 0 23 0 24 0 25 0 26 0 27 0 28 0 30 0	6				
9	7				
10 11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 20 10 21 10 22 10 23 10 24 10 25 10 26 10 27 10 28 10 30 10	8				
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<td< td=""><td>9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d<>	9				
12	10				
13 14 15 16 17 16 17 18 19 <td< td=""><td>11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d<>	11				
14	12				
15 16 17 18 19 <td< td=""><td>13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d<>	13				
16	14				
17 18 19 <td< td=""><td>15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d<>	15				
18 19 10 <td< td=""><td>16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d<>	16				
19 19 10 <td< td=""><td>17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d<>	17				
20	18				
21 22 23 30 24 30 25 30 27 30 30 30	19				
22	20				
23	21				
24	22				
25 30 <td< td=""><td>23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d<>	23				
26	24				
27 28 30 <td< td=""><td>25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d<>	25				
28	26				
29 30	27				
30	28				
	29				
31	30				
	31				

※ 작성요령 : 연구실책임자는 실험·실습 전 연구실 안전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연구실 내 게시(참석자명단 첨부).

[별표1의1]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

안전교육 참석자 명단

작성일자: 년 월 일

					'	경찰사 :	딘	걸 걸
NO	학번	성명	서명	NO	학번	성명		서명
1				21				
2				22				
3				23				
4				24				
5				25				
6				26				
7				27				
8				28				
9				29				
10				30				
11				31				
12				32				
13				33				
14				34				
15				35				
16				36				
17				37				
18				38				
19				39				
20				40				

[별표2] 산업안전보건표지

산업안전보건표지

	101 출입금지	102 보행금지	103 차량통행금지	104 사용금지	105 탑승금지	106 금연
금지 표지	3	*		W	3	
107 화기금지	108 물체이동금지		201 인화성물질경고	202 산화성물질경고	203 폭발성물질경고	204 급성독성물질경고
		경고 표지		②		
205 부식성물질경고	206 방사성물질경고	207 고압전기경고	208 매달린물체경고	209 낙하물 경고	210 고온경고	211 저온경고
\Diamond	A					
212 몸균형상실경고	213 레이저광선경고	214 발암성·변이원 성·생식독성·전 신독성·호흡기 과민성물질경고	215 위험장소 경고	짚심	301 보안경 착용	302 방독마스크 착용
		\$	\wedge	표시		S
303 방진마 <u>슿</u> 크 착	304 보안면 착용	305 안전모 착용	306 귀마개 착용	307 안전화 착용	308 안전장갑 착용	309 안전복 착용
(4)	(5)	0				P
	401 녹십자 표지	402 응급구호 표지	403 들것	404 세안장치	405 비상용기구	406 비상구
안내 표지	\oplus	+	*	***	비상등 7 구	1
407 좌측비상구	408 우측비상구					
[-]	₹- ■					

[별표3] 사고경위서<개정 2023. 12. 1.>

사고일시	
사고장소	

□ 사고내용 및 피해내용 (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바랍니다.)

※ 작성원칙

- 작성할 내용: ①사고원인 및 발생 경위 ②피해내용(인적피해, 물적피해) ③재발방지계획
- 육하워칙에 의거하여 작성
- <u>사고와 관련된「부상부위사진, 연구실내부사진, 실습기구사진 등」은 별도 파일로 첨부</u> (예시)
- 1. 사고원인 및 발생 경위
 - 2023. 1. 1. 17:00 OOO학생이 OO대학 111호에서 OO실험을 위해 알코올램프로 소독 중 플라스크를 놓쳐 비산된 파편으로 인하여 좌측 3번째 손가락 첫째 마디 베임
 - 2023. 1. 1. 17:30 OO병원 응급실 이송 및 봉합 진행
- 2. 피해내용: 학생 1명 좌측 3번째 손가락 절상
- 3. 재발방지계획: 실험 시 적절한 보호구(안전장갑) 착용, 향후 플라스크 취급 작업 시 클램프 체결 및 지지대를 활용하여 실험 진행

□ 피공제자(사고자) 현황

구분	성명 (사고자)	학번 (교직원번호)	학과(부)명	소속신분 (학부생 등)	연락처 (휴대폰)	주민등록번호 (앞자리)	이메일
1							
2							
3							
4							
5							

□ 기타 참고사항:

□ 업무처리 담당(※안전관리팀에서 작성 예정 / 학과에서 작성 금지)

담당자 성명	부서명	부서 전화번호	휴대폰번호
	안전관리팀		

피공제자(사고자)의 사고사실이 위 내용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, 만일 내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아래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확인합니다.

20 . . .

확인자(연구실 책임자)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성명: (서명/인)

[별표3의1] 연구실사고 조사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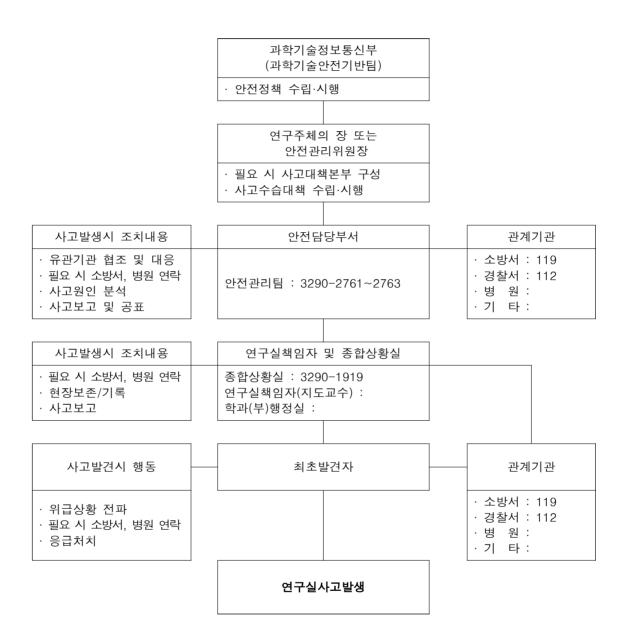
연구실사고 조사표

기관명(주소)								
사고일시	년	월	일	시	사고장소			
인적 피해		_ · , 나이,	신분	– .	종류 및 정도	기재		
물적 피해		천: 피해	_	배역 및 취	후정근거(소방서	등) 기재		
사고원인 및 발생경위	및 사고 - 육하	사고 관련 취급물질, 사고 당시 연구활동종사자(또는 피해자)의 연구활동 내용 및 사고 발생과정 등을 기록 - 육하원칙(언제, 누가, 어디서, 무엇을, 어떻게, 왜)에 의하여 작성하고, 사고현 장 사진 별첨						
조치현황 및 향후계획	보고 시	보고 시점까지 내부보고 등 조치현황 및 향후계획(치료 및 복구 등) 기록						
	구분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기록					현황 기록		
	안진	선관리구	구정 격	작성	즈	작성 여부 및 작성일 기록		
	정	성기점검	범 실시	Ч	실시	(일자) 또는 미	실시로 기입	
연구실 안전관리	정밀	밀안전전	한단 설	실시	실시	시(일자) 및 미	실시로 기입	
현황	연구활	동종사	자 보	험가입	가입(보험	명, 일자) 또는	미 가입으로 기입	
	연구	실안전	교육	실시		교육실시 현황	황 기입	
		구실의 지관리			기관예산(연구비에 겨		천원 천원 천원	
향후 재발방지 조치계획	상세계호	· 당세계획은 별첨						
		연구	2주체	의 장			(서명 또는 인)	
관계자확	·o	연구	¹ 실 C	안전관리	부서의 장		(서명 또는 인)	
	월 일)	연구	¹ 실안	전환경관	리자		(서명 또는 인)	
		연구	¹ 실책	임자			(서명 또는 인)	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]

[별표3의2] 연구실 사고보고 체계

연구실 사고보고 체계



[별표4] 연구활동종사자 교육·훈련의 시간 및 내용

연구활동종사자 교육 · 훈련의 시간 및 내용

교육 과정	교육 대상	교육 시간	교육 내용
신규 교육	신규 채용된 연구활동종 사자(교원, 연구(보조)원 등)		•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•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•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
	신규 채용된 자 외의 자로 신규로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(대학생, 대학원생동)	2시간 이상	용에 관한 사항
정기 교육	연구활동종사자	반기별 6시간 이상(저위험 학과 3시간 이상)	•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•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• 안전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항 •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•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•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특별 교육	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실에 근무하는 연구활동종사자	2시간 이상	•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• 안전한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사항 •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•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비고

- 1. 신규 교육・훈련을 받은 연구활동종사자는 해당 반기의 정기 교육・훈련을 면제한다.
- 2. 정기 교육·훈련은 사이버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100 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정하여 교육이수를 인정한다.

[별표5] 실험폐액 등의 수집 및 처리 <신설 2023. 12. 1.>

실험폐액 등의 수집 및 처리방법

구분		수집·처리방법	비고
	폐산		
	폐알칼리		
실험	그 밖의 폐액	①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·포장 (3회 까지의 세척수는 실험폐액으로 처리 必)	
폐액	할로겐 폐액	② 안전관리팀장에게 처리의뢰	
	중금속 폐액		
	기타폐액		
폐수		4회째의 세척수부터(3회 이후의) 연구실의 싱크대에 배수시켜서 처리	3회 까지의 세척수 유입 엄금
폐시약		① 시약별로 구분된 상태로 박스에 포장 ② 안전관리팀장에게 처리의뢰	
시약병 빈병		① 내부세척·뚜껑제거 후 마대자루에 수집 ② 배출자 스티커 부착·배출	금수성물질이 담긴 시약병은 세척금지
특정폐기물		① 황색봉투에 수집 ② 배출자 스티커 부착·배출	
	조직물류		보관기한 15일
의료 폐기물	병리계	①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수집 ② 의료폐기물 저장소에서 담당자 인계	보관기한 15일
	손상성		보관기한 30일

비고

- 1. 실험폐액 수집용기, 마대자루 등은 안전관리팀을 통하여 수령 및 사용한다.
- 2. 모든 폐기물은 보관기한을 초과하여 보관하는 것을 금지한다.
- * 실험폐액, 폐시약, 시약병 빈병, 특정폐기물 보관기한 : 보관이 시작된날부터 45일